

## 이 사회의 록

1. 회의종류 : 정기이사회
  2. 회의일시 : 2020년03월20일(금)18:00
  3. 회의장소 : 참참부자일식코스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45번길 23(연산동)
  4. 참석임원 : 대표이사  
이 사
  5. 안 건 :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회의내용

대표이사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사**, **이사**, **이사**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재적이사 11명 중 8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개회를 선언하다.

## 대표이사

오늘 의안인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및 법인 산하 시설 동연요양원, 동원재활원, 동원직업재활원, 반구대병원의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안을 상정하다.

대표이사

2020년 2월 11일 법인 감사이신 , 두 감사님께서 법인과 시설 및 의료기관 2019년도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감사님께서 이사님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감사

안녕하십니까? 감사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11일 감사와 저 감사는 법인과 산하시설인 동연요양원, 동 원재활원, 동원직업재활원 3곳과 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의 2019년도 결산서와 장부 등 제반 증빙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감사보고를 마치다.

## 대표이사

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이때 참석이사 전원 질의 사항이 없었음

## 대표이사

2019년도 법인과 시설 결산서와 장부, 제반 증빙서류 등 감사보고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 대표이사

그러면 2019년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 설명을 법인 직원 과장이 하겠습니다.

### 법인과장

2019년도 동향원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419,747,237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동원재활원 2,876,901,731, 동연 요양원 3,253,479,812원, 동원직업재활원 3,457,810,641원, 수익사업회계 반구대병원 4,826,761,118원에 대하여 각 항목별 세부항목과 각 회계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마치다.

## 대표이사

2019년도 법인회계와 3곳의 시설회계 및 1곳의 수익사업회계 결산 세입·세출 대하여 세부사항까지 법인 직원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법인과 산하시설의 업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설명 드린 대로 법인과 시설에 속하는 수입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 등을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감사를 통하여 보고가 되었음을 확인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 승인에 동의합니다.

이사

법인회계는 자체수입의 소규모 예산이며, 시설회계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동원직업재활원은 직원 인건비와 재가 장애인 급식비 외는 사업수입으로 집행되었고, 반구대병원은 병원 운영수입으로만 집행 되어져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모두 원만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사님의 동의에 재정합니다.

이사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을 엿으신지요.

대표이사

참석하신 이사님 모두 추가적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 승인 건에 동의를 묻다.



##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2019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대표이사

회의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며 금일 정기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폐회시간 18:30

위 의결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은  
말미에 서명날인 하다.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이 사회의 록

- 회의종류 : 임시이사회
  - 회의일시 : 2020년3월20일(금)18:30
  - 회의장소 : 참참부자일식코스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45번길 23(연산동)
  - 참석임원 :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5. 안건 : 법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
  6. 회의내용

## 대표이사

법인 이사 11명 중 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어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개회를 선언하다.

대표이사

이번에 토의할 안건은 법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라고 의안을 상정하다

## 대표이사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 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법인의 정관변경사항은 정관 제6조 및 제20조의 변경사항입니다.

법인 정관에는 제6조(경비)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북부산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우리 법인을 정관 제6조(경비)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금 중 사용되어져야하는 기부금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기부금은 공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사용되어어서는 아니되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2.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매년 기부금 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흠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라고 변경하고자하오며,

법인 정관 제20조(이사회)3항으로서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나 1월 중에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기에는 결산 집행 기간이 짧음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 정관 변경 조문으로 정기이사회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최한다.로 변경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

이사님들의 의견 발표바랍니다.

## 이 사

법인세법 시행령에 맞게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정관 변경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이 사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      사

법인정관변경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김재민

여러 이사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사

저 또한 정관변경 내용은 법에 따라 변경됨으로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 합니다

이 때 참석이사 모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참석이사 전원에게 동의합니까? 라고 묻자

이때 참석이사 전원 “예”라고 답하다.

대표이사

법인 정관변경 건이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

회의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때 폐회시간 18:50

위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이사 전원 말미에 서명날인 하다.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